

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 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 사용한 것은

- 1. 예산이용(1 건) 268,833,000 원
- 2. 예산전용(2 건) 196,500,000 원
- 3. 예산이체(494 건) 327,522,987,907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